

건설업체 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방향

- 외국의 입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

건설 공사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의 건설업체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는 부실의 예방과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공사의 규모와 그 기술적 요구의 정도에 따라 복잡한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건설 활동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상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의 건설업체 능력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기업 능력평가제도의 정착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관련 제도, 특히 도급한도액제도와 사전자격심사제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사전적 건설업체 능력 평가 체계를 갖느냐에 따라 업계의 경쟁 질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제도 개선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관련 제도의 단순한 소개보다는 그 기본 원리와 특징들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건설업 능력평가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찾는 작업은 현 시점에서 유용하면서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보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의 재정 상태와 미완성 공사 등을 감안한 소위 '재정적 입찰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정착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도급한도액제와 사전 자격 심사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접근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주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